

2026년도 제1~5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6년도 제1·2·3·4·5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일

전라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가. 제1회 임용시험(경력경쟁)

| 시 험 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계 | | 1개 | 27명 | |
| | 6급 | 수 의 | 수 의 | 3 | 순천 1, 광양 1, 진도 1 |
| | 7급 | 수 의 | 수 의 | 24 | 전라남도 2, 여수 1, 순천 1, 담양 2, 곡성 2, 고흥 3, 보성 3, 화순 1, 해남 1, 영암 1, 무안 2, 함평 1, 영광 1, 장성 1, 완도 1, 진도 1 |

나. 제2회 임용시험(경력경쟁) → 필기시험 3. 21.(토)

| 시 험 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계 | | 3개 | 12명 | |
| | 연 구 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7 | 전라남도 1, 목포 1, 여수 1, 담양 1, 무안 1, 완도 2 |
| |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3 | 영암 1, 영광 1, 완도 1 |
|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2 | 전라남도 2 |

다. 제3회 임용시험(공개경쟁) → 필기시험 6. 20.(토)

| 시 험 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 계 | | | 25개 | 1,546명 | |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8급 | 간호 | 간 호 | 77 | 목포 7, 여수 5, 순천 3, 나주 3, 광양 9, 담양 2, 곡성 2, 보성 6, 화순 5, 장흥 7, 강진 1, 해남 3, 영암 4, 무안 5, 함평 2, 장성 5, 진도 8 |
| | | 보건 진료 | 보건진료 | 14 | 여수 4, 순천 1, 곡성 2, 고흥 1, 장흥 1, 강진 2, 해남 2, 장성 1 |
| | 9급 | 행정 | 일반행정 | 417 | 전라남도 5, 목포 9, 여수 13, 순천 47, 나주 14, 광양 45, 담양 8, 곡성 22, 구례 6, 고흥 22, 보성 33, 화순 22, 장흥 21, 강진 5, 해남 10, 영암 15, 무안 49, 함평 10, 영광 5, 장성 13, 완도 24, 진도 4, 전남도의회 3, 목포의회 1, 여수의회 2, 광양의회 3, 고흥의회 3, 장성의회 1, 진도의회 2 |
| | | | 일반행정 (저소득) | 36 | 도 일괄 36 (목포 1, 여수 2, 순천 1, 나주 1, 광양 2, 담양 1, 곡성 1, 구례 1, 고흥 2, 보성 3, 화순 1, 장흥 3, 강진 1, 해남 2, 영암 3, 무안 2, 함평 2, 영광 1, 장성 2, 완도 2, 진도 2) |
| | | | 일반행정 (장애인) | 157 | 도 일괄 157 (전라남도 2, 목포 3, 여수 20, 순천 2, 나주 3, 광양 3, 담양 3, 곡성 11, 구례 4, 고흥 6, 보성 19, 화순 7, 장흥 11, 강진 3, 해남 8, 영암 10, 무안 1, 함평 12, 영광 4, 장성 18, 완도 4, 진도 3) |
| | | 노 동 | 2 | 해남 2 | |
| | | 세무 | 지 방 세 | 51 | 목포 3, 여수 4, 순천 2, 나주 2, 광양 8, 담양 2, 곡성 1, 고흥 3, 보성 2, 화순 2, 장흥 4, 해남 2, 영암 2, 무안 2, 함평 2, 영광 1, 완도 4, 진도 2, 신안 3 |
| | | | 지 방 세 (저소득) | 1 | 도 일괄 1 (신안 1) |
| | 지 방 세 (장애인) | | 18 | 도 일괄 18 (목포 1, 여수 5, 순천 1, 영암 1, 영광 1, 완도 2, 진도 3, 신안 4) | |

| 시 험 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 | 사회 복지 | 사회복지 | 226 | 전라남도 1, 목포 23, 여수 9, 순천 18, 나주 7, 광양 14, 담양 10, 곡성 6, 구례 8, 고흥 20, 보성 16, 화순 7, 장흥 8, 강진 1, 해남 12, 영암 22, 무안 12, 함평 8, 영광 5, 장성 7, 완도 2, 진도 10 | |
| | | | 사회복지 (저소득) | 12 | 도 일괄 12 (전라남도 1, 목포 1, 여수 1, 순천 2, 나주 1, 광양 1, 곡성 2, 화순 1, 영광 1, 진도 1) | |
| | | | 사회복지 (장애인) | 26 | 도 일괄 26 (목포 4, 여수 5, 나주 2, 광양 1, 구례 1, 고흥 2, 무안 2, 영광 1, 완도 2, 진도 2, 신안 4) | |
| | | 전산 | 전 산 | 전 산 | 15 | 도 일괄 15 (전라남도 2, 순천 1, 나주 1, 광양 3, 담양 1, 곡성 1, 강진 2, 무안 1, 진도 2, 전남도의회 1) |
| | | | | 전 산 (장애인) | 8 | 도 일괄 8 (전라남도 1, 여수 2, 순천 1, 광양 1, 진도 3) |
| | | 사서 | 사 서 | 사 서 | 9 | 목포 2, 순천 1, 광양 3, 곡성 1, 영광 1, 완도 1 |
| | | | | 사 서 (장애인) | 6 | 도 일괄 6 (여수 3, 순천 2, 광양 1) |
| | | 공업 | 일반기계 | 일반기계 | 23 | 전라남도 2, 목포 2, 순천 4, 광양 4, 담양 2, 곡성 1, 보성 1, 장흥 1, 영암 1, 무안 1, 장성 1, 진도 3 |
| | | | | 일반전기 | 27 | 도 일괄 27 (여수 3, 순천 3, 광양 4, 담양 2, 구례 2, 고흥 2, 보성 1, 장흥 1, 해남 3, 영암 2, 무안 1, 함평 1, 진도 1, 신안의회 1) |
| | | | | 일반화공 | 6 | 전라남도 2, 여수 1, 곡성 1, 영암 1, 진도 1 |

| 시 험 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 | 농업 | 일반농업 | 40 | 전라남도 1, 나주 1, 광양 1, 담양 1, 곡성 3, 구례 3, 고흥 5, 화순 1, 장흥 2, 강진 2, 해남 1, 영암 6, 무안 4, 함평 2, 영광 1, 장성 2, 진도 4 |
| | | | 일반농업 (장애인) | 2 | 도 일괄 2 (고흥 2) |
| | | | 축 산 | 25 | 순천 2, 나주 1, 담양 1, 곡성 4, 보성 1, 강진 2, 해남 2, 영암 7, 무안 2, 영광 1, 장성 1, 진도 1 |
| | | 녹지 | 산림자원 | 25 | 순천 4, 광양 6, 곡성 2, 보성 2, 화순 1, 장흥 2, 강진 1, 해남 2, 무안 2, 함평 1, 영광 1, 장성 1 |
| | | 해양 수산 | 일반수산 | 14 | 전라남도 2, 광양 1, 고흥 1, 보성 1, 장흥 2, 강진 1, 해남 1, 영암 1, 영광 1, 진도 3 |
| | | 보건 | 보 건 | 34 | 전라남도 2, 목포 7, 여수 3, 나주 1, 담양 3, 곡성 4, 화순 1, 장흥 1, 강진 2, 해남 1, 무안 3, 장성 4, 진도 2 |
| | | | 보 건 (장애인) | 5 | 도 일괄 5 (구례 1, 진도 1, 신안 3) |
| | | 식품 위생 | 식품위생 | 5 | 목포 1, 광양 1, 고흥 1, 화순 1, 해남 1 |
| | | 환경 | 일반환경 | 31 | 전라남도 3, 나주 2, 곡성 1, 고흥 1, 보성 2, 화순 1, 장흥 3, 강진 1, 해남 3, 영암 3, 무안 3, 함평 2, 장성 1, 완도 1, 진도 4 |
| | | 시설 | 도시계획 | 5 | 나주 1, 곡성 2, 고흥 1, 보성 1 |
| 일반토목 | 110 | | 전라남도 3, 목포 5, 여수 8, 순천 8, 광양 14, 담양 1, 곡성 9, 고흥 6, 보성 6, 화순 4, 장흥 10, 강진 4, 해남 4, 영암 4, 무안 10, 함평 5, 영광 5, 진도 4 | | |

| 시 험 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 제3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9급 | 시설 | 일반토목 (장애인) | 6 | 도 일괄 6 (담양 1, 고흥 2, 신안 3) |
| | | | 건 축 | 40 | 목포 2, 순천 4, 광양 4, 담양 2, 곡성 3, 고흥 5, 화순 1, 장흥 2, 강진 1, 해남 2, 영암 3, 무안 6, 함평 3, 진도 2 |
| | | | 지 적 | 17 | 광양 3, 장흥 3, 강진 2, 영암 3, 무안 1, 영광 2, 장성 1, 진도 2 |
| | | | 디 자 인 | 1 | 고흥 1 |
| | | 방재 안전 | 방재안전 | 41 | 도 일괄 41 (목포 1, 순천 1, 곡성 6, 구례 1, 고흥 1, 보성 4, 장흥 10, 강진 1, 해남 1, 영암 2, 무안 3, 함평 1, 장성 3, 완도 1, 진도 5) |
| | | 방송 통신 | 통신기술 | 14 | 도 일괄 14 (전라남도 1, 여수 1, 나주 1, 광양 2, 담양 2, 보성 1, 강진 2, 영암 1, 장성 1, 진도 2) |

라. 제4회 임용시험(경력경쟁) → 필기시험 8. 29.(토)

| 시 험 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 계 | | | 7개 | 127명 | |
| 제4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9급 | 녹지 | 조 경 | 16 | 순천 4, 나주 1, 고흥 1, 장흥 2, 해남 2, 무안 1, 완도 2, 진도 3 |
| | | 해양 수산 | 선박항해 | 12 | 여수 2, 고흥 3, 보성 1, 해남 2, 무안 1, 완도 2, 진도 1 |
| | | | 선박기관 | 12 | 전라남도 2, 목포 1, 여수 3, 장흥 1, 해남 1, 완도 2, 진도 2 |
| | | 보건 | 보 건 | 19 | 광양 2, 곡성 4, 구례 8, 영암 2, 무안 2, 영광 1 |

| 시 험 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 제4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9급 | 의료 기술 |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 4 | 고흥 1, 장성 1, 신안 2 |
| | | |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 5 | 여수 1, 장흥 1, 강진 1, 영암 1, 영광 1 |
| | | | 의료기술 (방사선사) | 8 | 순천 1, 광양 1, 고흥 1, 해남 1, 영암 1, 무안 1, 영광 1, 장성 1 |
| | | | 의료기술 (치과위생사) | 8 | 여수 1, 담양 1, 보성 1, 화순 1, 강진 1, 영암 1, 영광 1, 장성 1 |
| | | | 의료기술 (임상심리사) | 2 | 곡성 2 |
| | | 환경 | 수 질 (정수시설) | 6 | 도 일괄 6 (목포 1, 순천 3, 광양 2) |
| | | 운전 | 운 전 | 20 | 전라남도 2, 목포 2, 여수 3, 순천 4, 광양 2, 곡성 1, 해남 2, 전남도의회 1, 여수의회 1, 광양의회 1, 담양의회 1 |
| | | | 운 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 1 | 여수 1 |
| | | | 운 전 (보훈청추천) | 14 | 전라남도 1, 목포 1, 여수 1, 순천 1, 광양 2, 고흥 1, 보성 1, 해남 1, 무안 1, 영광 2, 완도 2 |

마. 제5회 임용시험(공개 및 경력경쟁) → 필기시험 **10. 31.(토)**

| 시 험 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 계 | | | 16개 | 110명 | |
| 제5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 7급 | 행정 | 일반행정 | 7 | 도 일괄 7 (전라남도 2, 광양 3, 화순 1, 영암 1) |
| 제5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9급 | 공업 | 일반기계 (고 졸) | 7 | 전라남도 2, 여수 1, 순천 1, 광양 2, 영광 1 |
| | | | 일반전기 (무대조명) | 2 | 순천 1, 광양 1 |
| | | | 일반전기 (고 졸) | 4 | 순천 1, 광양 2, 영광 1 |

| 시 험 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선 발 예정인원 |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
|---------------------|-------------|----------|---------------|----------|--|
| 제5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 9급 | 농업 | 일반농업 (고 졸) | 7 | 목포 1, 나주 1, 광양 1, 화순 1, 해남 2, 영암 1 |
| | | 해양 수산 | 일반수산 (고 졸) | 10 | 전라남도 1, 여수 1, 순천 1, 고흥 1, 완도 2, 진도 4 |
| | | 보건 | 보 건 (고 졸) | 4 | 목포 2, 구례 1, 장흥 1 |
| | | 시설 | 일반토목 (고 졸) | 17 | 전라남도 3, 순천 2, 광양 1, 담양 1, 곡성 1, 고흥 1, 장흥 2, 강진 1, 완도 2, 진도 3 |
| | | | 건 축 (고 졸) | 2 | 순천 1, 완도 1 |
| | 연구 사 | 농업 연구 | 작 물 | 4 | 전라남도 1, 순천 1, 고흥 1, 보성 1 |
| | | | 원 예 | 5 | 전라남도 4, 나주 1 |
| | | | 작물보호 | 3 | 전라남도 3 |
| | | | 농업경영 | 2 | 전라남도 2 |
| | 지 도 사 | 농촌 지도 | 작 물 | 29 | 도 일괄 29 (목포 1, 광양 2, 담양 3, 곡성 1, 고흥 2, 화순 1, 강진 1, 영암 2, 무안 1, 함평 3, 영광 1, 장성 2, 완도 1, 진도 4, 신안 4) |
| | | | 원 예 | 1 | 해남 1 |
| | | | 농업공학 | 6 | 순천 1, 광양 2, 화순 1, 해남 1, 완도 1 |

※ ‘도 일괄’ 모집 분야는 해당분야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후 별도 기준에 따라 ‘괄호’에 기재된 임용예정기관에 배정합니다.

※ ‘도 일괄’ 모집 분야를 제외한 직렬(직류)은 임용예정기관(도, 시군, 도 및 시군 의회) 별로 모집합니다.

※ 임용예정기관을 ‘전라남도’로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경우,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으로 전남도청 또는 전남도청 소속 직속기관·사업소 중에서 근무하며, ‘시·군’으로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경우, 해당 시·군 소속 공무원으로 해당 시·군청 및 소속기관 중에서 근무합니다.(도의회는 도의회에서, 시·군의회는 시·군의회에서 근무함)

2

시 험 방 법

가.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수의)

1)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가 임용예정 직위의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2) 제2차 시험: 면접시험

나. 제2~5회 공개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1)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4지 택1형,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

| 시 험 명 | 결 정 방 법 |
|----------|---|
| 공개경쟁임용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 경력경쟁임용시험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전형: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심사

3) 제3차 시험: 면접시험

3

시 험 과 목

가.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수의): 필기시험 미 실시

나.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연구사) * **수과목 전라남도 자체출제 과목(비공개/문제책 회수)**

|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필기시험 과목(제1~2차 병합시험) |
|-------------------|-------------|----------|------|--|
| 제2회 임 용 시 험 | 연 구 사 | 학예 연구 | 학예일반 | 필수(2)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박물관학 |
| | | 기록 연구 | 기록관리 | 필수(5)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 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선택(1) 문헌정보학 |
| | | 보건 연구 | 공중보건 |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미생물학, 식품화학 중 1과목 선택 |

다. 제3회 임용시험(공개경쟁)

※시험과목 중 **파란 글씨체**는 호남권 공동출제 또는 전라남도 자체출제 과목임(비공개/문제책 회수)

|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필기시험 과목(제12차 병합시험) |
|-------------------|---------------|--------------|-----------------------------------|---|
| 제3회 임 용 시 험 | 8급 | 간호 | 간 호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
| | | | 간 호 (장애인) | |
| | | 보건 진료 | 보건진료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 |
| | | 9급 | 행정 | 일반행정 |
| | 일반행정 (저소득) | | | |
| | 일반행정 (장애인) | | | |
| | 노동 | |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노동법개론 |
| | 세무 | | 지 방 세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
| | | | 지 방 세 (저소득) | |
| | | | 지 방 세 (장애인) | |
| | 사회 복지 | | 사회복지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 | | | 사회복지 (저소득) | |
| | | | 사회복지 (장애인) | |
| | 전산 | | 전 산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 | | | 전 산 (장애인) | |
| | 사서 | 사 서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
| | | 사 서 (장애인) | | |
| | 공업 | 일반기계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
| | | 일반전기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 | | 일반화공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

|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필기시험 과목(제12차 병합시험) |
|-----------------|-----|----------|---------------|--|
| 제3회 임용 시험 | 9급 | 농업 | 일반농업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 | | | 일반농업 (장애인) | |
| | | | 축 산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 | | 녹지 | 산림자원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 | | 해양 수산 | 일반수산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 | | 보건 | 보 건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 | | | 보 건 (장애인) | |
| | | 식품 위생 | 식품위생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 | | 환경 | 일반환경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 | | 시설 | 도시계획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 | | | 일반토목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 | | | 일반토목 (장애인) | |
| | | | 건 축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 | | 지 적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 | | | 디 자 인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
| | | | 방재 안전 | 방재안전 |
| | | 방송 통신 | 통신기술 |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라. 제4회 임용시험(경력경쟁)

* **소과목 전라남도 자체출제 과목(비공개/문제책 회수)**

|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필기시험 과목(제12차 병합시험) |
|-------------------|-----|----------|------------------------|---------------------------------------|
| 제4회 임 용 시 험 | 9급 | 녹지 | 조 경 | 필수(3) 조경학, 조경계획 및 설계, 조경재료(식물포함) 및 시공 |
| | | 해양 수산 | 선박항해 | 필수(3) 물리, 선박일반, 항해 |
| | | | 선박기관 | 필수(3)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
| | | 보건 | 보 건 | 필수(3)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 | | 의료 기술 | 의료기술 | 필수(3)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 | | 환경 | 수 질 (정수시설) | 필수(3)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 | | 운전 | 운 전 | 필수(2)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 | | | 운 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 |
| 운 전 (보훈청 추천) | | | | |

마. 제5회 임용시험(공개 및 경력경쟁)

※시험과목 중 **파란 글씨체**는 호남권 공동출제 또는 전라남도 자체출제 과목임(비공개/문제책 회수)

|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필기시험 과목(제12차 병합시험) |
|-------------------|-----|----------|----------------|--|
| 제5회 임 용 시 험 | 7급 | 행정 | 일반행정 | 필수(4) 국어(한문포함),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선택 ※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 9급 | 공업 | 일반기계 (고 졸) | 필수(3)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
| | | | 일반전기 (무대조명) | 필수(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 | | | 일반전기 (고 졸) | |
| | | 농업 | 일반농업 (고 졸) | 필수(3) 생물, 재배, 농업생산환경 |
| | | 해양 수산 | 일반수산 (고 졸) | 필수(3)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
| | | 보건 | 보 건 (고 졸) | 필수(3)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
| | | 시설 | 일반토목 (고 졸) | 필수(3) 물리, 토목일반, 측량(2015 교육과정상 실무과목이나 이론으로 출제) |
| | | | 건 축 (고 졸) | 필수(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 시험명 | 직 급 | 직 렬 | 직 류 | 필기시험 과목(제12차 병합시험) |
|-----------------|-----|----------|-----------------------------------|---|
| 제5회 임용 시험 | 연구사 | 농업 연구 | 작 물 | 필수(2) 재배학, 실험통계학 선택(1) 작물생리학 |
| | | | 원 예 | 필수(2) 재배학, 원예학 선택(1) 원예작물육종학 |
| | | | 작물보호 | 필수(2) 재배학, 작물보호학 선택(1) 작물생리학 |
| | | | 농업경영 | 필수(2)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선택(1) 농산물유통학 |
| | 지도사 | 농촌 지도 | 작 물 | 필수(2) 재배학, 작물생리학 선택(1) 토양학, 작물육종학, 작물보호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선택 |
| | | | 원 예 | 필수(2) 재배학, 원예학 선택(1) 농촌지도론 |
| 농업공학 | | | 필수(2)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선택(1) 농촌지도론 | |

※ 9급 고졸자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의 물리는 물리학 I, 생물은 생명과학 I에서 출제되며,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4

필기시험 시간

| 시 험 명 | | 직급(직렬) | 과목수 | 시험시간 |
|----------|------|-------------|-----|--------------------------|
| 제2회 임용시험 | 경력경쟁 | 연구사(학예, 보건) | 3과목 | 10:00~11:00(60분) |
| | | 연구사(기록) | 6과목 | 10:00~12:00(120분) |
| 제3회 임용시험 | 공개경쟁 | 8급·9급 | 5과목 | 10:00~11:50(110분) |
| 제4회 임용시험 | 경력경쟁 | 9급 | 3과목 | 10:00~11:00(60분) |
| | | 9급(운전) | 2과목 | 10:00~10:40(40분) |
| 제5회 임용시험 | 공개경쟁 | 7급 | 5과목 | 10:00~11:40(100분) |
| | 경력경쟁 | 9급·연구사·지도사 | 3과목 | 10:00~11:00(60분) |

가.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의 경우에는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 고시, 판례 등을 기준으로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과목 또는 문항에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합니다.

※ (예시) 필기시험이 2026. 3. 21.인 경우, 2026. 1. 31. 현재가 기준이 됨.

나.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시험명 | 과목수 |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과목 |
|-------------|-----|---|
| 제3회 임용시험 | 38개 | (8·9급)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공중보건,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사회복지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보건행정,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 제5회 임용시험 | 18개 | (7급) 국어(한문포함),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9급 고졸경채 등)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전기이론, 전기기기, 생물, 재배, 토목일반, 측량(2015 교육과정상 실무과목이나 이론 출제), 건축계획, 건축구조 |

다. 호남권(전남·전북·광주) 공동출제 및 전라남도 자체 출제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시험명 | 호남권 공동출제 및 전라남도 자체출제 과목 |
|-------------|---|
| 제2회 임용시험 | 전(쑤) 과목 자체(공동)출제(비공개) |
| 제3회 임용시험 | 노동법개론, 가축사양, 가축육종, 수산일반, 수산경영,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
| 제4회 임용시험 | 전(쑤) 과목 자체출제(비공개) |
| 제5회 임용시험 | (연구사·지도사) 전(쑤) 과목 자체(공동)출제(비공개) (9급) 농업생산환경,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환경보건, 공중보건 |

라.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하는 문제와 정답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에 게시되며, 이의제기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해당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해당하는 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③ 제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기준일(해당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현재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합니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9. 1. 1. 이전 출생자)

※ 제5회 임용시험 9급/고졸 분야는 2027년 2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조기 입학한 17세(2010. 1. 1. 이전 출생자)까지 응시 가능합니다.

다. 성별 : 제한이 없습니다.

라. 거주지 제한

1) 제1회 임용시험(수의6·7급) : 거주지 제한 없음

2) 제2회 ~ 제5회 임용시험 : 아래의 가)항과 나)항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전라남도(도 일괄 포함) 및 일반 시·군 응시자 * 지역모집 군(완도, 진도, 신안) 제외
 - 가)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나)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지역모집 군(완도, 진도, 신안) 응시자
 - 가) 2026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으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나)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연구사·지도사 응시자는 위 □의 지역모집 군(郡)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위 □의 거주지 요건 충족 시 모든 시·군에 응시 가능합니다.

※ 기술계 고졸(예정)자는 아래의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응시 가능합니다.(별첨 5 참조)

| 구분 | 거주지 제한 |
|------------------------|--|
| 전남지역 내 소재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 거주지 제한 없음(전국) |
| 전남지역 외 소재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 위 □, □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 □의 지역모집 거주지 제한 군(郡) : <u>완도, 진도, 신안</u> |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응시 가능합니다.(잔여 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

* 예) 1986.11.1. 이전 '전라남도 광주시' 거주 사실은 현재의 '광주광역시' 거주사실로 인정되므로 전라남도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26. 3. 27.)**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류 외의 다른 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 접수는 할 수 없음)
- 4)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제출 안내합니다.
- 5)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안내’ (별첨 3)를 참조**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호남권 공동출제 및 전라남도 자체출제 과목에 대해서는 일부 편의지원 내용(점자문제지, 음성지원 등)이 제한됩니다.

< 장애인 등 편의지원신청 구비서류 제출기간 >

- 제3회 임용시험(9급 공채): 2026. 3. 23.(월) ~ 3. 30.(월)
- 제5회 임용시험(7급 공채): 2026. 7. 20.(월) ~ 7. 27.(월)
- ※ 등기우편 :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26. 3. 23.) 또는 접수 마감일('26. 3. 27.)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자격이 혼합된 경우, 기간이 연속되면 응시 가능)
-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 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 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급(지원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류 외의 다른 직류에도 비수급(비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 접수는 할 수 없음)

4)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에서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 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해야 함.

사.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51조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응시희망자는 해당 지방보훈(지)청으로 사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3) 해당 보훈(지)청에서 추천한 응시자라도 **별도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아. 응시 자격요건(자격증 면허증, 학력 등) * 기준일: 해당 시험의 최종(면접)시험 시행예정일

1) 제1회 임용시험(경력경쟁)

| 구분 | 직급 | 직 렬 | 직 류 | 제 한 사 항 |
|----------|----|-----|-----|--|
| 1회 임용 시험 | 6급 | 수의 | 수의 | 수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 7급 | 수의 | 수의 |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

2) 제2회 임용시험(경력경쟁)

| 구분 | 직급 | 직 렬 | 직 류 | 제 한 사 항 |
|----------|-----|------|------|---|
| 2회 임용 시험 | 연구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국가유산 관리학 또는 문화유적학을 전공한 사람(학사학위 이상)으로서, 정학예사(1급 ~ 3급) 또는 준학예사 자격 소지자 |

| 구분 | 직급 | 직렬 | 직류 | 제 한 사 항 |
|----------------|-----|------|------|---|
| 2회 임용 시험 | 연구사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응시 자격요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 준용 |
| | | 보건연구 | 공중보건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3) 제3회 임용시험(공개경쟁)

| 구분 | 직급 | 직렬 | 직류 | 제 한 사 항 |
|----------------|----|------|------|---------------------|
| 3회 임용 시험 | 8급 | 간 호 |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 |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
| | 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급 ~ 3급 |
| | | 사 서 | 사 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 | | 시 설 | 지 적 |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

※ 2024년부터 '전산직렬' 응시에 필요한 필수 자격증 요건 삭제

4) 제4회 임용시험(경력경쟁)

| 구분 | 직급 | 직렬 | 직류 | 제 한 사 항 |
|----------------|----|------|-----------------|---------------------|
| 4회 임용 시험 | 9급 | 녹 지 | 조 경 |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
| |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항해사 1급 ~ 6급 |
| | | | 선박기관 | 기관사 1급 ~ 5급 |
| | | 보 건 | 보 건 | 조산사, 간호사 |
| | | 의료기술 | 의료기술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
| | | |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 |
| | | | 의료기술 (방사선사) | 방사선사 |
| | | | 의료기술 (치과위생사) | 치과위생사 |
| | | | 의료기술 (임상심리사) | 임상심리사 1급 ~ 2급 |

| 구분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제 한 사 항 |
|----------------|-----|-----|------------------------|--|
| 4회 임용 시험 | 9급 | 환 경 | 수 질 (정수시설)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 3급 |
| | | 운 전 | 운 전 | 제1종 대형면허 취득(군면허 제외) 후,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 | | | 운 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 제1종 대형면허(군면허 제외) 소지자로서, 굴착기(굴삭기)조종사면허 소지자 [3톤 미만의 굴착기(굴삭기)면허 제외] |
| | | | 운 전 (보훈청추천) | 제1종 대형면허 취득(군면허 제외)한 사람 |

5) 제5회 임용시험(공개 및 경력경쟁)

| 구분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제 한 사 항 |
|----------------|-----|------|----------------|---|
| 5회 임용 시험 | 9급 | 공 업 | 일반기계 (고 졸) |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학과[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26년 추천서 접수 마감일 현재 대학 중퇴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 | | 일반전기 (무대조명) | 무대조명전문인 1급 ~ 3급 |
| | | | 일반전기 (고 졸) |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학과[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26년 추천서 접수 마감일 현재 대학 중퇴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 | 농 업 | 일반농업 (고 졸) |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학과[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26년 추천서 접수 마감일 현재 대학 중퇴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고 졸) |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학과[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26년 추천서 접수 마감일 현재 대학 중퇴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 | 보 건 | 보 건 (고 졸) |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학과[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26년 추천서 접수 마감일 현재 대학 중퇴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구분 | 직 급 | 직 렬 | 직 류 | 제 한 사 항 |
|----------------|-----|------|---------------|--|
| 5회 임용 시험 | 9급 | 시 설 | 일반토목 (고 졸) |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학과[토목(토목 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26년 추천서 접수 마감일 현재 대학 중퇴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 | | 건 축 (고 졸) |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관련학과[건축(건축 설비)]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및 2026년 추천서 접수 마감일 현재 대학 중퇴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 연구사 | 농업연구 | 작 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식물학, 한약학 또는 농생물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 | | 원 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생물학, 식물학 또는 농생물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 | | 작물보호 | 농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을 전공하고 관련 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 | | 농업경영 |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 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 | 지도사 | 농촌지도 | 작 물 | 기 술 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 | 원 예 | 기 술 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 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바이오화학제품 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
| | | | 농업공학 | 기 술 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 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

6) 응시자격 요건 설명

가) 자격 면허증, 학력(추천서), 거주지제한, 가산특전, 장애인등록증, 저소득층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1회 임용시험(수의 6·7급, 수의연구사)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별첨 1]의 서류 제출

나) 연구사의 직렬(직류) 제한 사항 중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은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을 말합니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은 비전공인 사람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동일계통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또는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 예정인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에 기재된 학위수여일(또는 졸업일)이 면접 최종일 이내인 경우

다) 연구사의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및 추천서(별첨 2)”를 소속 학교장(또는 단과대학장)의 명의로 발급받아 별도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학과명과 동일한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학문 또는 관련 계통의 학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속 학교장(또는 단과대학장)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 및 추천서에 따라 판단하며, 증명서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학교 질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고졸자 구분모집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의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각급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2026년 추천서 접수 마감일('26. 7. 3.(금)) 현재 각급 대학을 중퇴한 자로서 출신(재학)고등학교장 추천자만** 응시가 가능하며, 학교장 추천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자는 졸업일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가 가능하며, 응시를 희망할 경우 **2026. 6. 4.(목)까지 출신학교로 추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을 받은 응시자라도 **별도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응시 원서를 접수**하여야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중 2026년 추천서 접수 마감일 현재 각급 대학에 재학(졸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으며, **고졸자 별도전형과 관련 세부사항은 < 별첨 5>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운전직렬(보훈청 추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제외) 응시 자격요건은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 후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차종의 해당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18】 기준에 따름

- 군 복무기간 중의 운전경력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군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회사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닐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격요건(자격증 면허증 학력)은 해당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졸업)*해야 하며, 해당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합니다.

* 자격(면허)증, 학위수여(졸업) 서류를 발급·제출 가능해야 함

7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 시 험 명 | 응시원서 접수기간 | | 시 험 일 정 | | | |
|----------|--------------------------------|-------------------|------------|----------------------------|--------------------------|------------|
| | 기 간 | 방 법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 험 일 | 합격자 발표일 |
| 제1회 임용시험 | 2026. 2. 9.(월) ~ 2. 13.(금) | 등기우편 제 출 | 서류전형 | - | 2. 24.(화) | 3. 3.(화) |
| | | | 면접시험 | 3. 3.(화) | 3. 9.(월) | 3. 19.(목) |
| 제2회 임용시험 | 2026. 2. 23.(월) ~ 2. 27.(금) | 인터넷 으로만 접 수 | 필기시험 | 3. 11.(수) | 3. 21.(토) | 4. 3.(금) |
| | | | 면접시험 | 4. 3.(금) | 4. 22.(수) ~ 4. 23.(목) | 5. 11.(월) |
| 제3회 임용시험 | 2026. 3. 23.(월) ~ 3. 27.(금) | | 필기시험 | 6. 10.(수) | 6. 20.(토) | 7. 14.(화) |
| | | | 면접시험 | 7. 14.(화) | 8. 3.(월) ~ 8. 14.(금) | 9. 2.(수) |
| 제4회 임용시험 | 2026. 5. 25.(월) ~ 5. 29.(금) | | 필기시험 | 8. 19.(수) | 8. 29.(토) | 9. 8.(화) |
| | | 면접시험 | 9. 8.(화) | 9. 28.(월) ~ 9. 29.(화) | 10. 23.(금) | |
| 제5회 임용시험 | 2026. 7. 20.(월) ~ 7. 24.(금) | 필기시험 | 10. 21.(수) | 10. 31.(토) | 11. 18.(수) | |
| | | 면접시험 | 11. 18.(수) | 12. 14.(월) ~ 12. 15.(화) | 12. 23.(수) | |

※ 제2회~제5회 임용시험의 서류전형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인성 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인성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자료에 반영됨)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홈페이지) 「시험정보」(<http://namdo.jeonnam.go.kr/sihum>)에 공고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8

응시원서 접수방법

가. 제1회 임용시험(수의6·7급, 수의연구)

1)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별첨 1] 수의(연구)직 서류제출 안내문 확인

2) 접 수 처: 전라남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

3) 접수방법: 등기우편 제출

- 우체국 등기 발송날짜가 2026. 2. 13.(금)까지인 경우 유효(우체국 소인에 표시)

· 우)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전라남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

· 우편봉투 겉표지에 '직류·직급 응시원서(예: 수의7급 응시원서)' 기재

※ 기간이 경과한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해 제출한 응시원서는 반송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에 휴대전화(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

-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는 제출서류와 동봉(응시수수료 : 7,000원)

나. 제2회~ 제5회 임용시험

- 1)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g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
 ※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 시스템
 관련사항은 ☎ 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접수 및 취소기간(시스템 장애 발생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시 험 명 | 응 시 원 서 | | |
|----------|--------------------------------------|--------------------------------------|--|
| | 접 수 기 간 | 취 소 기 간 | 추 가 취 소 기 간 |
| 제2회 임용시험 | 2. 23.(월) 09:00 ~ 2. 27.(금) 18:00 | 2. 23.(월) 09:00 ~ 3. 2.(월) 18:00 | 3. 6.(금) 09:00 ~ 3. 6.(금) 18:00 |
| 제3회 임용시험 | 3. 23.(월) 09:00 ~ 3. 27.(금) 18:00 | 3. 23.(월) 09:00 ~ 3. 30.(월) 18:00 | 6. 1.(월) 09:00 ~ 6. 2.(화) 18:00 |
| 제4회 임용시험 | 5. 25.(월) 09:00 ~ 5. 29.(금) 18:00 | 5. 25.(월) 09:00 ~ 6. 1.(월) 18:00 | 8. 10.(월) 09:00 ~ 8. 11.(화) 18:00 |
| 제5회 임용시험 | 7. 20.(월) 09:00 ~ 7. 24.(금) 18:00 | 7. 20.(월) 09:00 ~ 7. 27.(월) 18:00 | 10. 12.(월) 09:00 ~ 10. 13.(화) 18:00 |

※ 원서접수·취소는 기간 내 24시간 가능(단,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 3) 응시수수료: 7급 ㉞연구사 ㉞지도사 7,000원, 8 ㉞급 5,000원
 - 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신용카드결제매좌이체 ㉞대전화 결제비용] 이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취소기간 또는 추가취소 기간에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면제 자격 조회’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우선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이트 안내에 따른 증빙서류 확인 후 반환

다.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1) **동일날짜에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 단체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제3회 임용시험(6. 20.) : 8 ㉞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제5회 임용시험(10. 31.) : 7급 등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 단, 시도별 별도로 시행하는 경채 시험은 제외함.
- 2) 또한, 전라남도인사위원회와 전라남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3)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응시분야(직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접수기간 내에 취소 후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 4)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 바랍니다.
 - 사진파일(JPG) 규격: 3.5cm × 4.5cm 기준, 해상도 100DPI 이상
 -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6개월 이내 촬영)**이어야 함
- 5)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라며, 누락 [착오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6) 제2회~제5회 임용시험의 경우, 거주지 제한, 응시자격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시 확인합니다.
- 7) ‘도 일괄’ 모집분야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임용예정기관 선택이 없으며, 필기시험 **응시희망 지역(목포 또는 순천)**만 선택합니다. 단, 시험장 사정에 따라 응시희망지역 이외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8) **운전(보훈청추천)** 분야는 지방보훈(지)청장의 추천, **9급/고졸 경력경쟁** 분야는 졸업(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9) 응시표는 필기시험·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이후부터 출력 가능(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음)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 10) 장애인(임신부)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절차, 증빙서류 등은 [별첨 2] ‘장애인 등(임신부 포함)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제5회)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

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 시 험 명 | TOEFL(IBT) | TOEIC | TEPS | G- TELP | FLEX |
|-------|------------|-------|------|-----------------|------|
| 일 반 | 71 | 700 | 340 | 65 (level 2) | 625 |
| 청각장애 | - | 350 | 204 | - | 375 |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B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등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6>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부터 TOEFL(IBT) 성적표 점수 체계가 변경될 예정이나, 기존 점수 체계에 따른

점수도 함께 표기되므로 기존 점수체계를 기준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1) 2021.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 2021.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 **해외 응시 공인영어성적**의 경우, 전라남도 총무과 인재채용팀(061- 286- 3371)으로 문의하여 최소 성적 만료일자 **1개월 전까지 필수적으로 사전등록 신청**
- 3)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FL, TOEIC,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성적을 사전등록 해야 합니다.
 -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익, 텡스, 지텔프: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
 - 토플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10일 등록
 - ※ 플렉스(FLEX)의 경우 성적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므로 사전등록대상이 아님
 - ※ 유효기간 만료 한달 이내인 성적은 성적 사전등록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요청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 질의/응답에 확인글 등록 후 유선(061-286-3371) 요청)
- 4) 해당 검정기관에서 실시한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며, 정부기관·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면수·입사·입학·졸업 등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 1)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2)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2026. 10. 31.) 전일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
 - ※ 추가등록 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능력검정시험 성적제출
- 3) 사전성적을 등록한 응시자는 반드시 원서제출 시 혹은 추가 등록기간(2026. 7. 25. (토) ~ 10. 30.(금)) 동안 '능력검정시험 성적제출' 메뉴에서 응시한 시험에 성적을 등록해야 하며,

‘접수완료 원서’ 메뉴에서 성적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 (제5회)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기준점수(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2026. 10. 31.)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국사편찬위원회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면수·□□입사·□□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 1)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한국사 성적 등록내용을 토대로 국사편찬위원회에 시험성적 진위여부를 조회·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응시자에게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2)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

11

양성평등채용 목표제

가. 대상시험: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적용대상: 임용예정기관의 직급·직렬(직류) 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다. 채용목표: 30%(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라.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 인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8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장애인·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가. 적용대상: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단위

나. 적용방법: 필기시험에서 일반모집 동일직렬직류구분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13 가 산 특 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구 분 | 가산비율 | 비 고 |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직렬별 적용 가산점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바’ 참고 |
| 의사상자 등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
| 자격증 소지자 (직렬별 적용 가산점) [별첨 4] 참고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2)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선발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1)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른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2)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급/직류/선발예정기관)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선발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4, 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의 ‘나’항과 ‘다’항이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마.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아래의 직렬에 응시한 응시자가 직렬별 적용되는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직렬(직류) | 인정대상 자격증 | 가산비율 |
|----------|--|------|
| 행정(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 행정(노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7급은 3%) | |
| 세무(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

2)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구분 | 7급 연구사 지도사 | | 8급 | |
|------|--------------|------|--------------------|-----|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5% | 3% |

※ 해당분야 자격면허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제외

※ 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따름(별첨 4 참조)

바.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해당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모든 임용시험의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구분 | 제2회 임용시험 | 제3회 임용시험 | 제4회 임용시험 | 제5회 임용시험 |
|------|-------------------|-------------------|-------------------|-------------------|
| 가산점 | 3. 21.(토) 09:00 | 6. 20.(토) 09:00 | 8. 29.(토) 09:00 | 10. 31.(토) 09:00 |
| 등록기간 | ~ 3. 23.(월) 18:00 | ~ 6. 22.(월) 18:00 | ~ 8. 31.(월) 18:00 | ~ 11. 2.(월) 18:00 |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

※ 의사상자는 가산비율(5% 또는 3%)과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

※ 자격종류 및 가산비율, 번호(보훈번호 등)를 잘못 기재하거나, 미입력한 경우에는 가산점 불인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가산특전 대상자의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서류전형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가산특전 입력 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3)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14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 응시, 규격 사진이 아닌 경우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격 및 거주지 제한사항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은 **면접시험(기간) 최종일***을 의미합니다.

| 구 분 | 제1회 임용시험 | 제2회 임용시험 | 제3회 임용시험 | 제4회 임용시험 | 제5회 임용시험 |
|---------------|-------------|-------------|-------------|-------------|-------------|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 3. 9.(월) | 4. 23.(목) | 8. 14.(금) | 9. 29.(화) | 12. 15.(화) |

나. 시험 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전라남도 시험정보(namdo.jeonnam.go.kr/sihum)에 공고되며,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 등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일시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에 유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기재), 국가보훈등록증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답안카드에는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예비표기를 한 경우는 해당 문항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불가)
-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라.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서 출제한 과목에 한하여 공개하며, 호남권 공동출제 및 전라남도에서 출제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전자통신기기(**휴대폰, 스마트워치, PMP,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휴대할 수 없으며,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실 내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후 전자통신기기를 소지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에 있어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연령 □주지 □점 □학력 □경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거짓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임용을 위한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사. **필기시험에서 과락(공개경쟁은 각 과목 40점 미만, 경력경쟁은 각 과목 40점 미만 또는 총점의 평균 60점 미만)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계법령 등에 따라서 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필기시험 성적조회는 실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한하여 지정된 열람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필기시험 성적조회 열람 기간 공고)

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기관별로 **합격 유효기간(공개경쟁 2년, 경력경쟁 1년)내에 임용되며, 임용시기는 합격 유효기간 내의 범위에서 인사운영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타. 임용예정기관별로 선발함에 따라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자는 임용기관별로 임용된 날부터 아래 표에 기재된 기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될 수 있습니다.

| 전출(전보) 제한기간 | 임 용 예 정 기 관 |
|-------------|---|
| 5년 | 구례, 고흥, 장흥, 강진, 해남, 완도, 진도, 신안(해당 시·군의회 포함) |
| 3년 | 전라남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보성, 화순,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해당 시·군의회 포함) |

- 단, 자격증 □학력 □면허증 등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4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

단체로 제출을 제한합니다.

※ 정확한 사항은 임용예정기관 인사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기 타 사 항

가.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 영어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소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해 공고합니다. 또한, 영어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 2026년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전문교과 이수 요건 변경

-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 이수(전문교과 총 이수단위 중 관련 전문교과 이수학점 비율 50% 이상) 요건 적용

※ 전문교과 이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발예정직렬(류)와 관련된 「전라남도 지방 공무원 인사 규칙」의 [별표 7의4]의 자격증 취득 후 해당 직렬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격증에 따른 가산점은 미부여

○ 일반선박 및 선박기관 응시자격 변경

| 구 분 | 당 초 | 변 경('26년부터 적용) |
|---------|---|---|
| 일반선박 9급 | 기술사(기계,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 1급~6급, 기관사 1급~6급 |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산업기사(조선), 항해사 1급~6급, 기관사 1급~6급 |
| 선박기관 9급 | 기관사 1급~6급 | 기관사 1급~5급 |

○ 직류명 변경

- (당초) 농촌지도(농업) → (변경) 농촌지도(작물)

- (당초) 농촌지도(농업기계) → (변경) 농촌지도(농업공학)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25.1.1.)에 따라 시험과목 변경사항 반영

○ 학예연구직 응시 자격요건 관련 제한사항 변경(전공명 현행화)

- (당초) 문화재관리학 → (변경) 국가유산관리학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 개선(가산 제외)
 - (당초) 사회복지, 의료기술 가산대상 → (변경) 관련내용 삭제(응시자격 제한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사항 반영(자격증 통합 및 명칭 현행화)

라. 2027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선발예정직렬(류) 관련 전문교과(군) 세부기준
 - (당초)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변경)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기준
 - 응시자격 기준 추가
 - **일반고(특성화 학과 한정)의 졸업(예정)자 추가**
 - 학과성적 기준 변경(보통교과 평균 석차 관련)
 -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 삭제,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등급이 2.5이내인 사람으로 변경**
- 지방직 공채 시험과목 및 문항 수 변경
 - 시험과목
 - **급: (당초) 국어 → (변경) 공직적격성평가(PSAT)**
 - **급: (당초) 한국사 → (변경)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 시험문항 수: (당초) 5과목 100문항/과목당 20문제 (변경) **4과목 100문항/과목당 25문제**
- 시설(지적직) 필기시험 시험과목 일부 변경
 - (당초) 지적전산학개론 → (변경) 지적법규
 -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에 의함

마. 본 시험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전라남도 시험정보(<http://namdo.jeonnam.go.kr/sihum>)에 공고하며, 시험 관련 문의는 전라남도 총무과 인재채용팀(☎061- 286- 3371~6) 또는 전라남도 시험정보 ‘질의응답’ 코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전라남도 누리집(홈페이지) 「시험정보(<http://namdo.jeonnam.go.kr/sihu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된 모든 공고 안내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홈페이지) 「시험정보」에 공지합니다.

- <별첨 1> 수의 6·7급, 수의연구사 제출서류 안내 및 서식
- <별첨 2> 동일 계통학과 증명서 및 추천서(서식)
- <별첨 3>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 <별첨 4> 2026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면허 안내
- <별첨 5> 2026년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안내
- <별첨 6> 영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

〈별첨 7〉 2026년부터 달라지는 시험 제도 안내